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종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20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이종태 의원(1명)
찬성자: 강석주, 김경훈, 김규남,
김영철, 김용호, 김원중,
김태수, 김혜영, 박춘선,
신복자, 심미경, 윤기섭,
이종환, 임춘대, 채수지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지난 2025년 5월 15일에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」에 따라 조례 제명이 '시립학교'에서 '공립학교'로 일괄 개정됨.
- 이에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 중 제1조 및 제2조의 '서울특별시립'을 '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'으로 개정하기 위해 발의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 반영(안 제1조~제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립” 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
관한 조례」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초 · 중등 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<u>서울특별시립학교</u> 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<u>서울특별시립</u> 의 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·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구성 · 운영한다.	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 ① <u>서울특별시교육청</u> 공립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④ 생략	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운영위원회의 설치 등)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립”을 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”으로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